



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NO.	법조항	주요내용	위반 시 벌칙
1	제5조 [사업주 등의 의무]	-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-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-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	의무 위반 시 해당 위반행위별 벌칙 적용
2	제6조 [근로자의 의무]	근로자는 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,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,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.(다만 이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하지 아니함)	-
3	제14조 [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]	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,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	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4	제15조 [안전보건관리책임자]	※ 해당 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,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, 안전보건교육, 작업환경측정, 근로자의 건강관리,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,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·유지 등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5	제16조 [관리감독자(5인 이상)]	-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-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안전·보건점검,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,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등을 업무 수행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6	제17조 [안전관리자] 제18조 [보건관리자] 제19조 [안전보건관리담당자] (20인 이상)	- 안전·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 수행. - 사업의 종류,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	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7	제24조 [산업안전보건위원회]	※ 해당 시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8	제25조 [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]	※ 해당 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(시행규칙 [별표3]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참조)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9	제29조 [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]	- 정기교육 : 사무직(매반기 6시간 이상), 비사무직(매반기 12시간 이상) ※관리감독자 정기교육(연간 16시간 이상) - 채용 시 교육 :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(1시간 이상),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(4시간 이상), 그 밖의 근로자(8시간 이상) - 작업내용 변경 시 :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(1시간 이상), 그 밖의 근로자(2시간 이상) - 특별교육 : 일용·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(2시간 이상,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이상), 그 밖의 근로자(16시간 이상) - 건설업 기초안전·보건교육 : 건설 일용근로자(4시간 이상)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0	제32조 [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]	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1	제34조 [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]	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함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2	제36조 [위험성평가의 실시]	-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함. - 위험성평가 시 순회점검·설문조사·인터뷰 등으로 근로자(또는 근로자대표 요구 시)를 참여시켜야 하며, 실시 일정·유해위험요인·개선대책·이행계획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(50인 이상 사업장 2027.1.1. 50인 미만 2028.1.1.부터 과태료 적용)	미실시: 1,000만원 이하 근로자 참여·고지 누락: 500만원 이하 기록·보존 위반: 300만원 이하
13	제37조 [안전보건표지의 설치·부착]	-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, 시설,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. -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하여 설치·부착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4	제38조[안전조치] 제39조[보건조치] 제40조[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준수]	- 기계·폭발성을질·전기 및 굴착·하역/중량물 취급 및 추락·도사붕괴·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- 증기/흙/미스트 및 방사선/소음진동 및 정밀공작/단순반복 및 환기/채광/조명/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- 근로자는 제38조·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의한 사항을 지켜야 함	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5만원 이하의 과태료
15	제41조 [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] 제42조 [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]	-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-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(시행령 42조)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·이동·구조변경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·심사를 받아야 함	(근로자 해고, 불리한 처우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(필요 조치 미이행)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6	제44조 [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·제출]	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(PSM)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(적합통보 전에는 유해·위험 설비 가동불가)	적합통보 전 가동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제출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7	제51조 [사업주의 작업중지]	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18	제52조 [근로자의 작업중지]	-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. -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	-
19	제54조 [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] 제56조[원인조사]-제56조의2	-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. - 원인조사 대상이 중대재해뿐 아니라 화재·폭발·붕괴 등 '중대재해 등'까지 확대되며, 고용노동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(중대재해는 시행 이후, '중대재해 등'은 2026.12.1.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)	미보고·거짓보고 시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0	제57조 [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]	산재발생 시 은폐하지 않으며,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-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발생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·제출	은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·거짓보고: 1,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1	제63조 [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]	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(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)	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22	제80조 [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에 대한 방호조치]	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·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·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, 대여,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·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23	제93조 [안전검사]	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(2톤 이상)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원심식(산업용만 해당), 롤러기(밀폐형 구조 제외) 사출성형기(형 체결력 294kN 이상), 고소작업대,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, 혼합기·파쇄기 등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	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4	제114조[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] 제115조[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]	-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,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을 해야 함. 2026.1.16. 이후 유통되는 모든 MSDS에 제출번호 필수 기재	미게시: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미교육: 300만원 이하 과태료(대상자 1명당) 경고표시 위반: 300만원 이하 과태료
25	제125조 [작업환경측정]	소음(80dB 이상)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 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[별표21]) -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	1,000만원 이하의 벌금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6	제128조의2 [휴게시설의 설치]	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)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의 크기, 위치, 온도, 조명 등 설치·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	미설치: 1,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위반: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27	제129조[일반건강진단] 제130조[특수건강진단 등]	- 일반건강진단: 사무직(1회 이상/2년), 비사무직(1회이상/1년) - 특수건강진단: 소음, 화학물질, 분진 등 노출 근로자(인자별로 1회 이상/6~24개월, 시행규칙 [별표22, 23]) - 배치전건강진단: 특수건강진단 해당 업무 배치 전, 작업전한 시 실시	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8	제164조 [서류의 보존]	-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·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과의 선임에 관한 서류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·노사협의체 회의록(2년) -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-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, 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-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,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, 안전진중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- 위험성평가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'조치 이행 서면'에 해당하여 5년간 보존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각 서류마다 적용)